

청주지방검찰청 2023년도 제1차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7월 7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분야)	담당 업무	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방호서기보 (9급)	- 청사 방호 및 민원 안내 - 검찰 업무 지원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2명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청주시 서원구)

2. 근거 법령

- 가. 「국가공무원법」
- 나. 「검찰청법」
- 다. 「공무원임용령」
- 라. 「공무원임용시행령」
- 마. 「공무원임용규칙」
- 바.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사.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규정(대검 예규 1248호)」

3. 응시 자격 요건 [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 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위 각 항목(가항~라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소극적 전형을 실시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으로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21명 이상 100명 이하인 경우 20명 합격자 선정, 101명 이상인 경우 30명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④ 우대사항
⑤ 가점사항	⑥ 감점사항

나. 면접시험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면접위원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하여 ‘상·중하’로 평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 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 ②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5. 시험 일정

공고기간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 7. 7.(금) ~ '23. 7. 18.(화)	'23. 7. 13.(목) ~ '23. 7. 18.(화)	'23. 7. 28.(금)	'23. 8. 7.(월)	'23. 8. 18.(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청주 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6. 우대사항 및 가점·감점사항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 직무 관련 분야 근무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소속되어 **방호·경비·보안** 등 업무로 근무한 경력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023. 7. 18.) **최근 10년 이내** 근무경력에 한정, **연차별 차등 우대**
- ① 업체명, ② 근무 기간, ③ 직위(직급), ④ 담당 업무, ⑤ 근무 형태(전임·비전임 여부, 주 근무시간)가 **모두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력(재직) 증명서 양식에 ①~⑤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로 [별지 제7호]를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일부만 기재,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근무경력 세부사항 】

- ① 주 근무시간 기재 시 **정확한 시간으로 기재 요함** (예시) “전임, 주 40시간”
- ②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2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2년 × (20시간/40시간) = 총 1년 경력 인정
- ③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1) ‘폐업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2)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3)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가능)는 **필수 제출**, 4)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 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여 관련 경력이 입증되어야 우대 가능함**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 정보 확인서)
- ④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외에, 추후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장에서 경력 검증자료 제출 절차 있음(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부)

나. 공인무도 자격증 소지자(2단 이상)

- 공인무도단종의 단수 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 가장 높은 단수 1개만 인정, 차등 우대

※ [별첨2] 무도 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다.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비지도사(일반),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소지여부별 차등 우대

라. 전산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종전 워드프로세서 1급만 인정, 2·3급은 해당 없음)
-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종류·등급에 상관없이 1개만 인정(동일 배점)

마.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 소지자

- 1급·2급 소지 시 상위 등급만 인정
- 등급별 차등 가점

바.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벌 전력(혐의없음 제외)이 있는 경우 건별 차등 감점

※ 우대사항(가항 ~ 라항), 가점사항(마항) 및 감점사항(바항)

【 우대사항 및 가점·감점사항 적용 시 유의사항 】

- ①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되므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에 유효한 것에 한함
 - ※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② 서류전형 시 이력서 상에 기재한 사항 중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③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판단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④ **자격증 보유**
 -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⑤ 외국어로 된 서류나 증빙서류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
 - ※ 한글 번역본 미제출 시 해당 경력 불인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3. 7. 13.(목) ~ 2023. 7. 18.(화)

나. 접수 주소: (우)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청주지방
검찰청 총무과 채용 담당(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다. 접수 방법

- **등기우편** 제출(**직접방문·인터넷·택배·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2023. 7. 18.)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8. 제출서류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 응시자 기본서류 1부(별지 제1호 서식, 필수제출)

나.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필수제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응시수수료) 부착(5,000원)**

- ※ 인지는 우체국 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
- ※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를 동봉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다.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필수제출)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필수제출) ※ A4 용지 2매 이내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필수제출) ※ A4 용지 2매 이내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필수제출)

사. 주민등록초본 1부(상세, 필수제출)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아.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 1부(필수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의 경우,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제출)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차. 기타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 제출)

※ 서류전형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 항목(page4~page6)을 참조하여 제출

9. 임용예정일 및 보수 수준

- 2023. 9.초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10.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가. 신원진술서 2부

나. 기본 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2부

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라. 탈모 상반신 사진(반명합판) 3매

마. 경력증명서 1부(공무원 경력 또는 국·공영 기업체 근무경력 해당자)

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사. 급여통장 사본 1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11.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 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제출 서류의 누락 여부 및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사.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 공고된 시험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차.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2023. 8. 18.)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별지 제8호]를 제출한 희망자에 한하여 사본 후 반환**해 드립니다.
- 카.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타.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043-299-4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인사혁신처 홈페이지→참여민원→신고센터→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할 수 있습니다.

[별첨1]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지
방호	방호서기보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 방호 및 민원 안내 ○ 검찰 업무 지원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성실성,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과업이해력,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전문지식,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 방호 등 직무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방호 지식 ○ 검찰청 주요 업무 관련 지식 ○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컴퓨터 활용 지식 		
응시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등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공인무도 자격증 소지자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산 자격증 소지자 		
가산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 보유자 		

[별첨2] 무도 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개)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62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택견보존회
